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8. 7. 19. 개정 2020. 3. 11. 개정 2021. 12. 27. 개정 2023. 10. 25. 개정 2024. 5. 27.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3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시설, 진흥원 도급 공사 및 사업, 진흥원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4. 6. 27.>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진흥원의 임직원, 시설,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진흥원 도급 건설공사(이하 "도급공사"라 한다) 근로자 및 국민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5. 2.>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진흥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제3조(근로자의무) <삭제 2024. 5. 2.>

제4조(사업주의무) <삭제 2024. 5. 2.>

- 제4조의2(안전보건방침 수립) ① 원장은 대·내외적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경영방침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우선순위로 하는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방침은 모든 근로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 시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12. 22.]

- 제4조의3(준수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임직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임직원 등에게 제공
 -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② 임직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5. 2.]
-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2., 2023. 10. 25., 2024. 5. 2., 2024. 6. 27.>
 -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사업 수행 또는 그 밖의 건설물·설비 등 공사, 용역 등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1의1.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직원,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도급공사 근로자, 국민(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 2. "안전관리"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해 인원 및 시설물, 공사 등 용역사업 등 관리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 3. "보건관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하다.
 - 4. "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용구, 방호용구, 접지용구 등의 제반 물품을 말한다.
 - 5.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 위험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6.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하다.
 - 7. "중대재해"라 함은 업무상재해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원장을 말한다.
 - 9. <삭제>
 - 10. "안전보건담당부서"라 함은 청사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안전관리부서), 근로자

보건관리를 운영하는 부서(보건관리부서)를 말한다.

- 11. "관리감독자"라 함은 체계적인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 직제규칙 제10조에 따른 직위자를 말한다.
- 12.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부서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원 및 안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13. "작업책임자"란 도급인과의 계약에 의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수행을 하는 도급받은 사업주 또는 그 사업장의 직원을 말한다.
- 14.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1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 1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1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18. "상주수급인"이란 도급 계약에 따라 진흥원 내에서 일정기간 상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수급인, 관계수급인 전부를 말한다.
- 19. "발주공사"란 진흥원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진흥원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 20.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21. "도급공사 안전담당자"란 진흥원에서 공사용역을 도급하는 경우 공사용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적임자로 지정한 진흥원 직원을 말한다.
- 22. "국민"이란 교육 수강 또는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진흥원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12.27.>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구성) ①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분야 담당부서를 두어 안전보건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7조(원장) <삭제 2021.12.27.>

-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진흥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조정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 10. 25.>
 - ② <삭제 2024. 6. 27.>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안전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또는 안전담당부서 내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1. 영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 2.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 3.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 4. 안전 활동의 지도 및 감독
 - 5. 안전(재해)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보고와 기록 유지
 -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확산 활동
 - 7.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8.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기 위

하여 보건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②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또는 보건담당부서 내의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③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1. 영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 2.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 3.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 4.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5.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 6. 작업환경의 측정 및 평가
 - 7.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 8. 그 밖의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7.>
- **제10조의2(관리감독자)** ① 원장은 체계적인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 직제규칙 제 10조에 따른 직위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개정 2022.12.22., 2024. 6. 27.>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1.12.27.><개정 2022.12.22., 2024. 5. 2.>
 - 1. 소관 부서에서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소관 부서에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소관 부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소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작업 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실시
 - 5. 소관 부서 내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6.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7. 소관 부서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8. 소관 부서 업무와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 파악·검토 및 법규 준수평가 실시
 - 9. 그 밖의 해당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중 경영부서의 본부장과 서울청사 주재 본부장은 총괄 관리감독자로서 청사별 관리감독자를 대표한다. <신설 2024. 6. 27.>

제10조의3(안전보건지킴이)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 내 근로자 1인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상주 도급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 담당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2.]

제11조(소방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각종 화재로 인한 근로자의 생명과 진흥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담당부서 내의 소방관리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한다.<개정 2022.12.22.>
-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소방계획서의 작성
 - 2. 자위소방대의 조직
 -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4. 소방훈련 및 교육
 - 5. 소방시설, 화기 취급의 관리·감독
 - 6. 그 밖의 소방관리상 필요한 업무
- 제12조(분야별 안전담당자) ① 진흥원은 각종 화재로 인한 근로자의 생명과 진흥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계, 전기, 영선 등 분야별안전담당자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 ② 안전담당자는 안전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설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13조(조직) ① 진흥원은 제8조 제3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3. 10. 25., 2024. 6. 27.>
 - ② 위원회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제1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원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2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2., 2023. 10. 25.>
 - ③ 위원회는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근로자측, 사용자측)을 각각 둔다.
 - ④ 원장·근로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

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0. 25.>

제15조(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
- 2.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
-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7.>
- 4. 그 밖의 진흥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1.12.27.>
- ② 원장 및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소집) 위원장은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 25.>
- **제17조(성립 및 의결)** 위원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의안)** ①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소집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접수된 의안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소집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내용, 의결·결정 사항
 - 4. 그 밖의 토의 사항
 -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③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주수급인 등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

제4장 안전보건관리

- 제18조의3(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12.27.>
 -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활동 계획
 - 3. 안전 조직 구성 · 인원 및 역할
 -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제18조의4(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 대표는 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신설 2021.12.27.><개정 2022.12.00.>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2.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 3.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사항
 - 5.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6. 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제18조의5(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 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24. 5. 2.>
 - ②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2.]

- 제19조(안전보건관리활동) 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진흥원의 각종 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 ②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1.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4. 추락, 붕괴, 낙석, 천재지변 등에 의한 위험
- 5. 작업용구, 각종 표지물, 방호구 등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
- ③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진동, 이상기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4. 검퓨터 단말기 조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20조(근로자의 의무)<삭제 2021.12.27.>

- 제21조(안전순찰) ① 안전관리자는 시설보안관리 전담직원을 통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안전 순찰일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부서는 안전 순찰 시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지 시정하거나 지체없이 안전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환경개선·작업중지·작업자 교체·교육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 ③ 안전관리부서는 안전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 제22조(점검결과조치) 안전관리자는 안전순찰시 발견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별로 조치할 사항은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안전에 관한 회합을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제반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2.12.22.>
 - 1. 작업계획, 작업공정, 작업방법, 안전조치 등 적정 여부
 - 2. 건설기계,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및 정비
 - 3. 유해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 4. 안전장구의 착용 확인 및 사용방법
 - 5. 건설기계 등 사용 작업 시 운전자의 자격, 면허 등 적격 여부
 - 6. 작업구역의 안전방책, 표지 등 안전조치
 - 7. 재해발생 우려 시의 작업 중지 또는 대피
 - 8. 작업 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및 상주수급인이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

- ③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및 상주수급인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2.>
- 제23조의2(작업허가) ① 관리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상해·화재·질식·감전·추락 등 위험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작업 개시 전 위험성평가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제1항의 위험작업 당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계획서 등 작업허가를 위한 제반서류와 안전조치된 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허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 ③ 관리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전부터 종료까지 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의 작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의 안전작업 허가 및 작업전회의 활동 지침(TBM)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2.22.]

- 제24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신설 2024. 5. 2.>
 - 1. 안전작업허가 미승인
 - 2. TBM(작업 전 안전회의) 미실시
 - 3. 수급인 근로자 개인보호구 미착용
 - 4. 작업구획 미설정
 - 5.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 사항 등
 - ② 근로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지체없이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개정 2022.12.22.>
 - ③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12.27.> <개정 2022.12.22.>
- 제25조(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제80조 제1항 및 영 제98조에서

정하는 것은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27.>

-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규칙 제9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27.>
- ③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기계·설비의 방호장치에 대해서 정기검사 및 작업 개시 전 점검을 통해 그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④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방호장치의 설치, 사용상황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신설 2021.12.27.>
- ⑤ 근로자는 방호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1.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그 기능을 상실시키지 않을 것
- 2. 불가피하게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기능을 상실시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 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의 허가를 얻을 것
- 3. 제2호에서 해체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방호장치는 그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바로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4. 방호장치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를 통해 연락할 것
- 5.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제4호의 연락이 있었을 때에는 바로 작업의 중지를 명하고 신속하게 회복조치를 할 것
- 제25조의2(안전인증)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또는 사용 시에는 안전인증 검사에 합격한 것을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제25조의3(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1.12.27.>
 - ②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법 제9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기계 등을 작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12.27.>
- 제25조의4(안전보건표지) 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조치에 대한 안내, 그밖에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제25조의5(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안전 기준은 법, 영, 규칙, 기준 및 지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12.27.>

- 제25조의6(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영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 취급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②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 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③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④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제25조의7(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영에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취급할 경우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제공한 자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1.12.27.>
 - ②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되는 경우
 -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3. 유해성 ·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③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저장 용기 및 포장에 영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12.27.>
- 제25조의8(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은 진흥원의 산업재해 예방교육, 건강검진 등 각종 제도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신설 2021.12.27.><개정 2024. 5. 2.>

- ③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고,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질환의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제25조의9(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환경 내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5.>
-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2.22.]
- **제26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에 대하여 법 제129조 및 법 제130조에 따른 신체적 건강진단과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진단·치료·교육 등 정신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2.12.22., 2024. 5. 2.>
 -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27., 2024. 5. 2.>
 - ③ 진흥원은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직원의 업무장소변경, 업무시간 단축, 특수건강진단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 ④ 건강진단의 주기, 검사항목, 방법 등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21.12.27.>
- 제26조의2(고객응대근로자 보호)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칙 제41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폭언 등을 하지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3.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에 따른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 ③ 고객응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2.12.22.]

- 제27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해당 업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제28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적합한 각종 안전보건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②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상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개정 2021.12.27.>
 -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해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12.27.>
- 제29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 등 사업 수행에 있어 상주수급인 등 근로자가 진흥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2.12.22., 2023. 10. 25.>
 - 1.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 2. 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상주수급인 등에게 제공
 - 3.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확인
 -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 8. 도급 작업자 현황 관리 및 작업허가 등 출입통제
- 제29조2(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흥원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의 준수와 산업재해예방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2.12.22., 2023. 10. 25.>
 - ② 그 밖의 적격수급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의 적격수급인 선정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2.12.22.>
- 제30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법 제64조 제

1항에 따라 상주수급인 등 근로자가 진흥원의 사업장에서 공사 등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2.12.22.>

- 1. 도급인과 상주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 순회 점검 및 합동안전점검
- 3. 상주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제공 등 지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등이 발생한 경우
- 5. 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생·휴게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이용의 협조
- 6.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상주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7.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상주수급인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지체없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27., 2022.12.22.>
- ③ 도급사업의 담당부서는 상주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2.>
- ④ 상주수급인은 도급사업 수행 시 진흥원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2.>
- ⑤ 상주수급인은 도급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해당 작업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2.>
- ⑥ 그 밖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신설 2022.12.22.>
- 제30조의2(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상주수급인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 2. 상주 수급인 대표자 전원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1. 규칙 제79조 제2항에 따른 협의체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
 - 2. 근로자의 위생·편의시설 등 근로환경 마련 및 개선에 대한 사항
 - 3.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 결과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수급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2.12.22.]

- 제30조의3(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상주수급인이 있는 경우 주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5.>
 -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작업장 순회점검에 따라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주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지킴이로 하여금 제1항의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2.]

- 제30조의4(도급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상주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2. 상주수급인 대표자 전원
 - 3. 상주수급인 근로자 각 1명

[본조 신설 2022.12.22.]

제5장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의 발생에 따른 직접 및 간접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식·기능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2.12.22., 2024. 5. 2.>
 - 1. 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 이상/해당자. 다만,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해당자. 다만,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다. 특별교육(16시간 이상/해당자.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라. 근로자 정기교육(6시간 이상/반기)
 - 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시간 이상/년)
 - 바. 법정의무 교육
 - 사. 물질안전보건교육

- 아. 기타 필요한 교육
- ② 직원은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수급인 등 직원 외의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규칙 제 27조 1항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4. 5. 2.>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또는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
- 1. 교육일시 및 장소
- 2. 교육담당자
- 3. 교육과정 및 내용
-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1조의2(재난안전대응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화재·지진·침수·정전 등 주요 재난상황별 업무연속성 유지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2.]
- 제32조(직무교육) 진흥원은 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3조(안전보건홍보) ①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및 진홍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 1. 특별 안전보건 점검
 - 2. 표어 · 포스터 모집
 - 3. 사고사례 발표회 및 위험예지훈련 경연대회
 - 4. 안전 및 보건 관련 워크숍
 - 5. 기타 안전보건 관리활동에 필요한 행사
 - ② 원장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담당부서 주관으로 정기적인 안전문화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2.>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4조(산업재해의 분류) ①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산업재해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4. 5. 2.>

- 1. 업무상 사고
- 2. 업무상 질병
- 3. 출퇴근 재해
- ② 제1항 각 호의 유형과 그 밖의 업무상의 재해 유형,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22.12.22., 2024. 5. 2.>
- 1. <삭제 2022.12.22.>
- **제35조(산업재해의 조사)** ① 산업재해의 조사는 안전 또는 보건 소관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중대재해
 - 2. 대외적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 3. 당해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4. 사고조사 지시가 있을 때
 - ② 산업재해 발생부서는 현장보존, 증거보존등 사실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6조(산업재해 응급조치) ① 누구든지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등 재해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부상자는 적절한응급 처치 후 지체없이 이송한다.<개정 2021.12.27.>
- 제37조(산업재해 보고)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에게 관할 내 사고에 대한 보고의 책임을 지며 사고의 은폐 또는 허위보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재해 보고는 응급조치 후 지체없이 사고일시, 경위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구두로 보고하고, 사고 발생 후 2주 이내에 사고일시, 사고 대상자, 사고 원인, 사고 경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5., 2024. 5. 2.>
 - 1. <삭제 2024. 5. 2.>
 - 2. <삭제 2024. 5. 2.>
 - 3. <삭제 2024. 5. 2.>
 - ② 안전관리자는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추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 ③ <삭제 2024. 5. 2.>
 -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 2.「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 4.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개정 2020. 12.22.>
- 제37조의2(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① 원장은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22.><개정 2022.12.22.>
 -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22.><개정 2022.12.22.>
- ③ 제2항의 문책에 관한 세부절차와 양정 기준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 12.22.>

제7장 위험성 평가

- 제38조(위험성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방법 및 시기, 교육, 개선, 결과의 기록·보존, 그 밖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 ②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가스, 증기, 분진, 추락, 붕괴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제39조(평가방법) 위험성 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 1. 사전준비
 -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3. <삭제>
 - 4. 위험성 결정
 -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6.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 제40조(실시시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등
 - ④ 그 밖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의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2.12.22.>

제8장 도급공사 안전관리

[본장신설 2024. 5. 2.]

- 제41조(도급·계약 시 안전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부서 직원 중 해당 공사의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직원을 도급공사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도급부서 담당자는 수급업체에 공사현황, 안전관리조직, 위험작업 안전대책, 비상 시 조치계획 등이 반영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물품, 용역 계약 시 물품 납품 등의 사유로 위험 기계·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도급공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

- 제42조(안전보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① 도급부서 담당자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이 산정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발주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도급부서 담당자는 계약 시 공사기간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안전관리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

- 제43조(착공 전 안전관리) ① 도급공사 안전담당자는 착공 전 현장소장과 면담을 통해 수급 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도급공사 안전담당자는 착공 전 고위험 작업공종 및 작업예정일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에게 공사 수행 중 수급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 ③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부서 담당자, 도급공사 안전담당자가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

- **제44조(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 ① 도급공사 안전담당자는 공사 중 수급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안전대책 및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② 도급공사 안전담당자는 공사 중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부적합 내용은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자는 고위험 작업시기 및 공사별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안전담당자에게 이행 독려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 ④ 주말(휴일)에 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말(휴일)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도급공사 안전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작업하도록 관계자 주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

제4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도급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

제46조(건설재해예방 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 해당되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건축법」제11조에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등 시행령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5. 2.]

제9장 기타

[전면개정 2024. 5. 2.]

- 제47조(근로자 표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실적이 우수 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2.12.22.>
 -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 인사관리규칙 제7장 포상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22.12.22.>
- 제48조(안전보건제안) ① 원장은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게시판, 이메일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안전보건담당부서 또는 관리감독자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 의견의 검토.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2.]

- 제49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수행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는 경우의 재해보상은 진홍원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4. 5. 2.>
- 제50조(교통재해예방) ① 업무용차량 관리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차량의 기계적 이상 등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업무용차량을 운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운행 전 계기판 및 육안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
 - 2. 운행 중 경고등 표시, 차량 이상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 후 본 인 및 동승자 전원은 차량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3. 차량 이상,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업무용차량 관리부서로 연락 후 대체차량 이용 및 교통사고 처리방법 등 이행
 - 4. 운행 시부터 회사로 복귀할 때까지 주행로, 제한속도, 주행방법 등 관계 법령 준수
 - 5. 운전자는 최소 1시간 간격으로 10분 이상의 휴식 및 차량 내 공기의 주기적 환기 실시
 - ③ 그 밖의 교통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 차량관리 지침 제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4. 6. 27.>

[본조 신설 2022.12.22.]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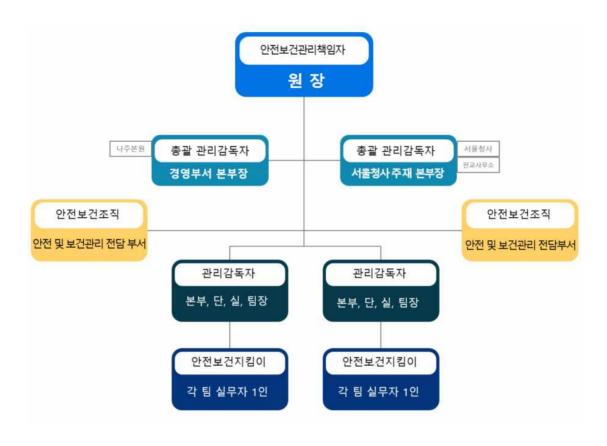
부 칙<2024. 5.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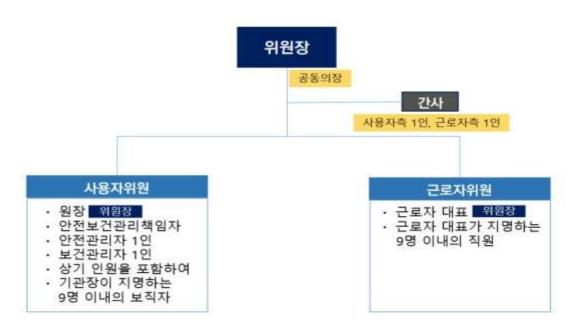
부 칙<2024. 6.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제6조 관련)



[별표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설 2020.12.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4조 관련)



[별표 3] 작업중지 <개정 2022. 12. 22.>

<u>작 업 중 지(제24조 관련)</u>

다음 기상특보 기준에 의하여 작업중지를 시행한다.

<호우, 태풍 및 강풍>

종류	주의보	경 보
호우	・3시간 강우량 6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10mm이상	・3시간 강우량 90mm ・12시간 강우량 180mm
태 풍	▶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 폭풍 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강풍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 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이상 또는 순 간풍속 25m/s 이상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 간풍속 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 예상될 때)

<폭염>

종류	정 의
주의보	ㆍ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ㆍ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설, 한파>

종류	정 의
대설주의보	▶겨울철에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	▶ 겨울철에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10월~4월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 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10월~4월 중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10월~4월 중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	 10월~4월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 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10월~4월 중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10월~4월 중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초미세먼지(PM-2.5) 4단계>

경보단계	발령기준
관심	·당일 50μg/㎡ 초과, 다음날 50.75μg/㎡초과 예보
주의	·당일 150μg/㎡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75μg/㎡ 초과 예보 ·'관심'2일 연속된 상황에서 1일 지속 예상
경계	·당일 200μg/㎡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150μg/㎡초과 예보 ·'주의'2일 연속된 상황에서 1일 지속 예상
심각	·당일 400μg/㎡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200μg/㎡초과 예보 ·'경계'2일 연속된 상황에서 1일 지속 예상